

## 2026년 경기도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2026년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인 「경기도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고부가 섬유소재 제작 및 수출 지원’ 지방비 매칭 사업)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30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섬유관련 기업의 신제품 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확보
- 모집규모 : 시제품제작 지원 0개사(산업용 섬유 분야)
- 사업기간 : 2026. 05. 01. ~ 2026. 11. 30.

### II. 사업내용

- 지원 내용 및 규모

구분	지원내용
산업용 섬유소재 시제품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섬유소재 시제품 제작 지원 0개사 내외</li> <li>- 기업별 지원금 최대 25,000천원 이내(자부담 10,720천원 이내)</li> <li>- 시제품 제작과정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지원</li> <li>- 제안 기술 분야에 대한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 (지원금 외 별도 지원, 선택 사항)</li> </ul>

※ 시제품 제작 사업비의 30% 부담(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모든 사업비는 현금 기준임(현물부담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은 기업 통장 개설과 기업부담금 선입금 이후 지급

※ [참고]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금액	25,000천원	10,720천원	35,720천원
비율	70.0%	30.0%	100.0%

### Ⅲ. 신청자격 및 방법

#### □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섬유관련 제조기업
  -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① 경기도에서 산업용 섬유소재 분야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② 또는 의류용 섬유소재를 제조하고 있으나 산업용 섬유소재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희망하는 기업

#### □ 신청방법

구분	지원자격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사업관리플랫폼 <b>온라인 접수</b>(<a href="https://in.ktextile.net">https://in.ktextile.net</a>)</li> <li>- 신청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a href="http://www.koteri.re.kr">www.koteri.re.kr</a>) 및 접수 사이트(<a href="https://in.ktextile.net">https://in.ktextile.net</a>)에서 교부</li> </ul>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 제1호] 맞춤형 신소재 개발제안서</li> <li>○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li> <li>○ [서식 제3호]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li> <li>○ [서식 제4호]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024년 및 2025년, 2025년 발급불가 시 2023년으로 대체)</li> <li>○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li> </ul>
접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 04. 13.(월) ~ 04. 17.(금) 18:00 까지</li> <li>*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관리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만 인정</li> <li>*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li> </ul>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기업성장센터</li> <li>- 이상훈 책임(031-860-0968, lsh@koteri.re.kr)</li> <li>- 김미지 센터장(031-860-0931, raaw111@koteri.re.kr)</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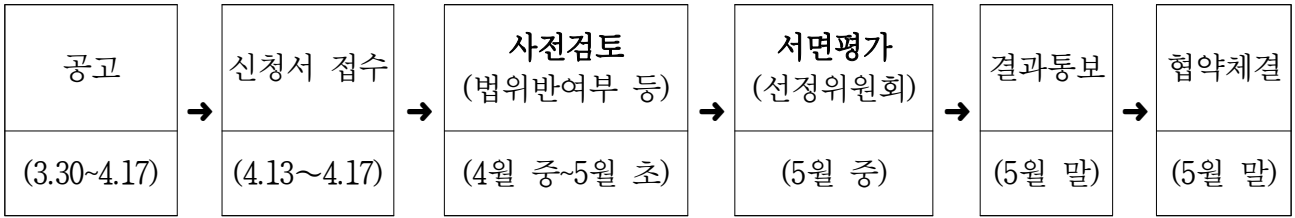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서 서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신청서 서면평가 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항목(비중)
적정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명확성(10)</li> <li>○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5)</li> <li>○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li> </ul>
차별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의 독창성(10)</li> <li>○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업 역량(10)</li> </ul>
시장성(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진입 가능성(20)</li> <li>○ 수출확대 및 수입 대체 가능성(20)</li> <li>○ 경제적 기대효과[매출증대/고용창출 등](20)</li> </ul>

※ 평가점수 외에도 제출서류 미비사항, 재무 건전성(2년 연속 부채비율 500% 미만, 2년 연속 유동비율 50% 이상), 경기도 범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점(최대 5점까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은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li> <li>- 가점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단, 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li> <li>- 증빙서류는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li> </ul> </li> <li>○ 가점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점] 경기도 ‘기업RE100’ 참여기업 확인서</li> <li>- [2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li> <li>- [2점] 주 4.5일제 도입기업 확인서</li> <li>- [2점] 친환경 신소재 개발 과제(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결정)</li> </ul> </li> </ul>
---

□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접수마감일 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 분야(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 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2년 연속 500% 이상, 유동비율 2년 연속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위변조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개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 사업으로 3년 연속 또는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8호)

▶ 적용법률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서식4]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V.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기업성장센터

- 이상훈 책임(031-860-0968, lsh@koteri.re.kr)
- 김미지 센터장(031-860-0931, raaw111@koteri.re.kr)